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申 龍 相 (研究委員, 3705-6330)

한·미 FTA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이 진전될 경우, 미국에 비해 금융고객 보호에 대한 법체계가 빈약한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양국간 감독수준 차이의 해소를 위해 감독기관 간 동등성 원칙을 담은 MOU를 체결하는 등 감독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상승시켜 한·미간 교역규모와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도 건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이미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서비스의 대외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완전자유화되었으며,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현지법인 설립까지 허용됨으로써 금융서비스 공급기업의 법적형태에 관한 제한이 대부분 철폐됨.
 -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해상보험업, 신용정보업·신용평가업·투자자문업에 대해 허용되었으며, 증권업 및 외환거래의 ‘해외소비’도 허용됨.
 - 은행업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되었으며, 금년 들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과 단기원화증권 발행이 허용됨.
-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¹⁾과 해외소비²⁾ 형태의 금융서비스 공급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함.
 - 예들 들어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와 생명보험업,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중개, 보험대리업의 경우에는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의 형태로 공급될 수 없게 되어 있음.

1)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이란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예: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로 정의됨.
 2)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란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 취득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예: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정비 등)하는 경우를 말함.



- 과거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이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에 기반을 둔 개방형태로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및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 현재 각국의 WTO 협상 양허안에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의 사업영위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사실상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가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들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향후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측면을 위해서도 금융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점진적 개방이 필요함.
 - 협상결과에 따라 국경간 거래를 개방하는 경우, 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임.
- 그러나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즉,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업종의 외국 금융회사 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이 외국 금융회사에 의해 독점될 경우, 상업적 주재를 근간으로 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과 달리 고용창출, know-how 이전 등과 같은 개방의 부수적·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 정도와 ② 감독유형의 선택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세계화의 물결과 실물거점이 없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이 발달하면서 각국의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감독의 이용국가기준 적용이 점차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제공국가 감독기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향후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각 단계 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실행되도록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감독은 국경간 거래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부문 개방에 대비한 감독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 이전에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동시에 선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영업규제중심의 금융감독체제에서 위험중심(risk-based)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규제·감독 기준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감독을 위해서는 양국 감독기관간의 협조가 긴요함.
 - 자국의 금융서비스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감독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용국가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용국가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나, 물리적 실체가 없는 국경간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국가가 감독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개방 초기에는 이용국가 감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국경간 거래가 활발해져 국가간 감독방식 차이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점진적인 제공국가 감독방식 적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제공국가 감독기준의 적용시에는 이용국가 감독기관이 제공국가 감독기관에 의존해야 하므로 제공국가 감독기관의 능력에 대한 신임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감독기관 간에 동등성 원칙 등이 담긴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가간 감독수준의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통한 해외진출도 고려하여 개방수준 및 개방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임.
 - 향후 국가간 금융서비스 거래에서 국경간 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계획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

나. 新금융서비스³⁾

- ‘新금융서비스’ 개방을 허용할 경우, 회원국은 자국영토 내에 설립된 타회원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자국영토 내에서 타회원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개방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감독체계 미비라는 문제점을 안게 됨.
 - 각국의 FTA에서도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협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

3) ‘新금융서비스’는 특정 회원국 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됨.



리나라가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한국-EFTA(유럽자유무역 연합) FTA에서는 新금융 서비스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 新금융서비스를 개방하면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회사가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新금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금융고객 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또한 현재의 금융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분쟁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분쟁기구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사후적 소비자 보호도 미흡한 실정임.
- 미국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新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서비스의 life-cycle이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新금융서비스가 미래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미리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개방 여부를 판단할 때 개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재조합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
- 감독체계가 없다는 점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新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감독체계가 좀 더 선진화된 이후에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 新금융서비스 개방에 앞서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 국내의 법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특정 미래시점의 개방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新금융서비스 협상의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기존 체결국 및 미래 FTA 후보국들의 금융부문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개방가능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 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기존 및 미래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新금융서비스를 모두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상대국의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 분류를 상호 비교한 후 금융상품별 개방가능 분야를 선정하고 미래시점의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타국간의 FTA 예를 적용하여 개방을 불인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